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호        |
| 의결연월일 | 2021. 9. . |

|          |
|----------|
| 의결<br>사항 |
|----------|
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제안연월일 | 2021. 9. . |
| 제안자   |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|

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안연월일 : 2021. 9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  
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·  
운영하고자 함.

## 2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13명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11명)

나.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 :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

## 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나.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## 관련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